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 지원〉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4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u>확대</u>)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u>지원</u>) ① ----- ----- ----- ----- ----- ----- ----- ----- ----- ----- -----포함 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u>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u> ----- -----.

현행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분산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대규모 발전시설과 장거리 송전망의 설치 필요성의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갈등 회피,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 분산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경제 효과를 의미함.

외부경제란 어떤 행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수준보다 과소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행법 제46조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노력 의무 외에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 사업을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을 뿐임.

이에,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에 부합하게 사업자에게 지원한다면 국가 전체 관점에서 최적화된 수준까지 분산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에서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입은 재산권의 침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분산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사업자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편익인지, 국가가 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는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제47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수익을 위해 분산 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익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은 곤란하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법 제정을 위한 제21대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분산 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보상 지원 근거를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같은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현재 규정으로 반영되었음.

문 의 처
02)6788-5537